

2) 개정개요

2001.1.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 2%의 5배인 10%로 중과세 하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1.1.1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도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적용례를 두었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내지 제46조의11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8.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1) 배 경

주민세소득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는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0.12.31까지 한시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로 적용하게 된 것은 정부의 GNP의 5% 교육재정 확보계획에 따라 시·도세 총액의 2.6%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에 대한 지방재정보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도세 총액의 2.6%를 부담기로 하였던 시·도의 교육비 부담이 2001년부터는 오히려 3.6%로 증가하였고(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인건비 10%부담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로 환원하지 못하고 200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10%로